



금융감독원

# 보도자료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보도   | 배포 시             | 배포  | 2022.8.17.(수) |     |                |
| 담당부서 | 보험사기대응단<br>보험조사팀 | 책임자 | 팀 장           | 김정운 | (02-3145-8888) |
|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선 임           | 함소울 | (02-3145-8756) |

##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! - 소비자경보 「주의」 발령

### ■ 소비자경보 2022-7호

|    |           |    |    |
|----|-----------|----|----|
| 등급 | <b>주의</b> | 경고 | 위험 |
| 대상 | 금융소비자 일반  |    |    |

###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

- ◆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!
- 환자들은 “**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**”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○○구 소재 ◇◇◇◇한의원을 내원
-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

### [소비자 유의사항]

- ▶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,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.
- ▶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융감독원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I.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-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하여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.
- 최근 적발된 브로커 조직과 ◇◇◇◇한의원 관계자에게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되었으며,
-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

### [ ◇◇◇◇한의원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판결내용 ]

- **(브로커)**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(진료비)의 30% 또는 매월 5,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수취

\* '19.6월~'20.9월 기간 중 환자 653명 알선 대가로 총 5억 7천만원 수취

➔ 브로커 조직 대표 1명에 대하여 **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**

- **(한의원)**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보신제(공진단)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 교부

\* '19.6월~'20.12월 기간 중 총 1,869회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

➔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에 대하여 **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**

- **(환자)**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의 진료기록부,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 총 15억 9,141만원 부당 편취(1인당 평균 244만원)

➔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 판결 선고 이후, **환자 653명에 대하여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 수사·검찰 송치 진행 중**

## II. 소비자 행동요령

### 1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돼요

-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,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.
- 병원이나 브로커가 “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”는 제안에 현혹되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
### 2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, 영수증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!

- 최근의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,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

### 3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병원과 브로커는 적극 신고해주세요!

-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에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.
-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·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.

#### [ 보험사기 신고방법 ]

##### ▶ 금융감독원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

- ① 전화(1332→4번 금융범죄→4번 보험사기), 팩스(02-3145-8711)
- ② 우편(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)
- ③ 인터넷(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우측의 '보험사기신고')

##### ▶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

※ 금융감독원 시아나운서가 전하는 금융꿀팁 동영상은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- ① 유튜브 : 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O\\_ISKiGezc]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O_ISKiGezc)
- ② 페이스북 : <https://www.facebook.com/watch/?v=745368739859229>
- ③ 네이버TV : <https://tv.naver.com/v/28618693/list/789130>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